

준 비 서 면(항소이유서)

사 건 2001나49318 손해배상(기)

원 고 강승원외69

피 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전부 불복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은 구체적인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가. 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조의2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항 제1호에서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

하는 행위”를 ‘가격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남용행위의 유형이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남용행위의 유형과 기준’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998. 8. 28. 소위 ‘신가입제도’를 시행하면서, 반환이 되지 않는 성질의 가입비를 산정하면서, 비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결정(또는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의 대가를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행위의 위법성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 피고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가입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피고가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에 필요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피고의 자본비용(피고가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10.5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비정상적인 15%라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입비 47,660원을 과다책정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참조). 그에 따라 피고의 광고를 보고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원고들은 위 액수만큼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에 관하여

또한 부당하게 높은 가입비를 정한 피고의 약관(일반전화 이용약관중 가입비 부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위 조항은 동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의 약관은 동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선택가능성이 주어졌다고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나, 선택가능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균형잡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강제1호증의1,2에서 드러나듯이, 기존 설비비 242,000원에서 새로운 가입비 100,000원을 제한 142,000원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 자신이 계산한 100,000원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 자신이 가입비로 산정한 100,000원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것이고, 사실은 47,660원이 과다책정된 것이라는 정보는 전혀 원고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선택가능성이란 본건에 있어서 전혀 의미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피고는 “선택이후에 시중이자율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선 피고가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자본비용 10.56%는 시중이자율의 변동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1998. 8. 28.의 시점에서는 고정되어 있던 비율입니다. 또한 피고가 신가입제도를 도입한 1998. 8. 28. 당시의 시중이자율도 피고가 적용한 15%보다는 훨씬 낮은 13% 정도였습니다(강제4호증 참조).

요컨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사후적인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가입비가 부적정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입비가 결정될 때부터 부당한 이자율인 15%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후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 결 론

따라서 1심 판결은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 9. 24.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인)

서울지방법원 제6민사부 귀중